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28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7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6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한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24조를 제15조의2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중 총계 “1,596”을 “1,580”로, 일반직 계 “1,594”를 “1,578”로, 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
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
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87”을 “777”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
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
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08”을 “404”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
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6”을 “65”로,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96”을 “1,580”로, 일반직 계 “1,594”를 “1,578”로,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
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1”을 “811”로,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
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
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68”을 “364”로,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기상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8”을 “67”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
기 “32”를 “31”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및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및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9]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23조 관련)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 특허 심사업무	14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9명 (6급 9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4. 특허 심사업무	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특허 심사업무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특허 심사업무	4명 (6급 4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6급 3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5조의2</u> (생략)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u>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u> <u>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u>제24조</u> (생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u>	<u>제15조의3</u>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u> <u>제15조의2</u> (현행 제24조와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삭 제></u>

<u>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 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 축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8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 다.</u>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 제조장비심사팀은 <u>2024년 12 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②·제3조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 ----- 2026년 12 월 31일-----. ②·제3조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596</u>		<u>1,580</u>		-16
	.		.		.		
	.		.		.		
일반직	계		<u>1,594</u>		<u>1,578</u>		-16
	.		.		.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 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 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87</u>		<u>777</u>		-10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408</u>	<u>404</u>	-4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66</u>	<u>65</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34</u>	<u>33</u>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596</u>	• <u>1,580</u>	-16
일반직 계	• • <u>1,594</u>	• • <u>1,578</u>	-16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u>821</u>	• • • <u>811</u>	-10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 사 · 해양수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약무 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368</u> ·	<u>364</u> ·	-4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 · 기상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68</u> ·	<u>67</u> ·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32</u> · ·	<u>31</u> · ·	-1